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정 2019.11.15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(이하"회사"라 한다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"관련법규"라 한다)과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구분) 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 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. 운용보수는 운용기간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 말하고,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산정된 방식에 따라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  나. 판매회사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  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  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 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  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절차) ①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공시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